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60호 2023. 1. 6.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3-2호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2023-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 삼척시 고시 제2023-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1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2호 2023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 13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672-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3-2호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삼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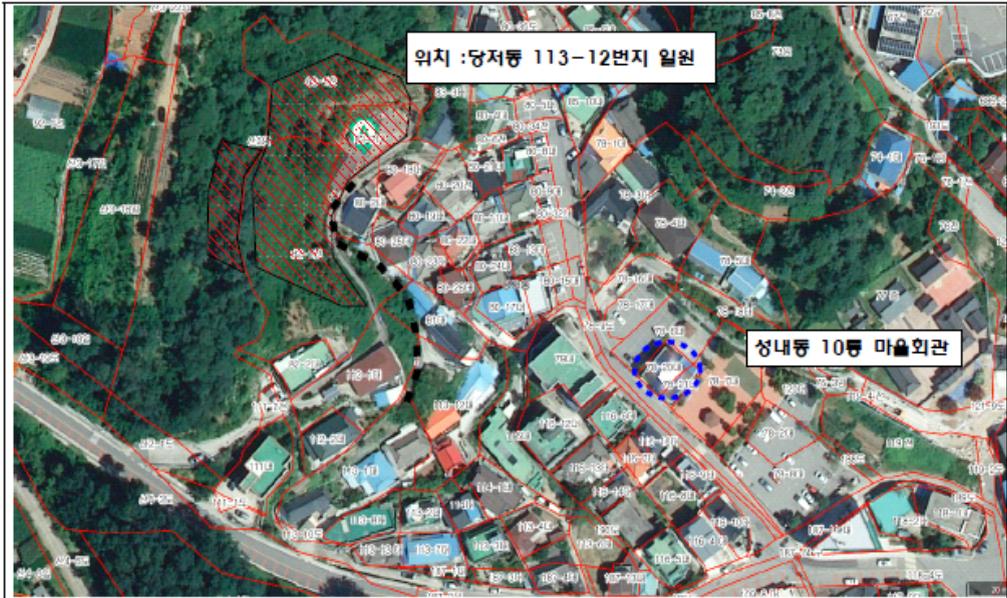
1. 실시계획 개요

- 가. 사업명: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113-12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soil-nailing 231공, 격자블럭 1,390㎡ 등
- 라. 사업비: 2,180백만원
- 마. 사업기간: 2023. 1월 ~ 2024. 12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삼척시장
- 나. 주소: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위치도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타부서 및 타기관 사업의 중복성과는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는 유동차량에 붕괴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붕괴위험지역 사면정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6.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재 원 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군 비	
계	2,180	1,090	530	560	
2022년	100	50	10	40	실시설계
2023년	500	250	125	125	보상협의
2024년	1,580	790	395	395	공사추진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 향후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8. 수용 또는 토지보상 : “붙임”참조

9. 실시절계 도서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열람 ☎(033)570-388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033)570-38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토지조사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1	삼척시 당저동	83-2	대	450	45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0, 303동 101호(장미아파트)	강*자	
2	삼척시 당저동	산2	대	10,919	346.5	-	삼척김씨대종회	
3	삼척시 당저동	112-1	대	810	6.3	춘천시 교동 37	재단법인강원도 향교재단	
4	삼척시 당저동	113-12	대	943	16.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12 신반포8차아파트 304동 404호	아*민	
5	삼척시 당저동	81	대	390	13.8	삼척시 당저동 81	아*우	
6	삼척시 당저동	80-2	대	334	7.2	울산광역시 중구 방어진동 1159-12	오*섭	
7	삼척시 당저동	82-1	전	2,274	1,246		삼척시	
8	삼척시 당저동	83-1	전	1,286	750		삼척시	

지장물조사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건축연면적(㎡)	건축동수(층수)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삼척시 당저동	83-2	주택	43.72	1동(1층)	울산광역시 중구 향교길34, 411호(평산연립)	최*남	
2	삼척시 당저동	83-2	주택	34.56	1동(1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0, 303동 101호(장미아파트)	강*자	

삼척시 고시 제2023-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 계획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①(정상동지구, 삼척온천) 경계 일부 변경: 면적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구 및 획지계획 중 대상이 아닌 도로 제외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최근고시)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정상동	정상동 351번지 일원	29,494	-	29,494	2020. 5. 14. (삼척시 고시 제8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11	정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경계 일부 변경 : 면적 변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 내 토지와 외부 인접 토지의 교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 (1) 용도지역 - 변경 없음(제2종일반주거지역: 10,516㎡, 일반상업지역: 18,978㎡)
- (2)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변경 없음

(1)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	25~38	보조 간선 도로	3,163 (구역 내 105)	광장 2 교동 243-10	중로1-24 정상동 132-2	일반 도로	교동 택지	1983. 6. 20. (강원도고시 제83호)	2020. 11. 27. (삼척시고시 제192호)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변경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26,160			26,160	
A	26,160	1	정상동 351번지 일원	26,160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계획으로, 도로 부분(획지 B-1)은 제외함.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용 도	•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 이하	법정: 60%
			일반상업지역	• 30% 이하	법정: 80%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법정: 250%
			일반상업지역	• 400% 이하	법정: 1,300%
		높 이	• 37층 이하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 경관계획에 의한 색채계획		
건축 선	•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준용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게재

마. 이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3-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6.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932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3-12호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주민조례방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연서대상 주민총수,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장

1. 202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② 청구 서명인수
54,937	6,868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삼척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청구 서명인수

- ▶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2.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1. 삼척시장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읍면동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15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54,087	8,113 이 상	4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541	27	541	8,391	1,259
			원덕읍	541			3,012	452
			근덕면	541			4,732	710
			하장면	185			1,232	185
			노곡면	104			692	104
			미로면	259			1,725	259
			가곡면	96			636	96
			신기면	94			626	94
			남양동	541			6,510	977
			성내동	541			6,654	999
			교 동	541			12,496	1,875
			정라동	541			7,381	1,108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 1/3 이상(4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 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② 삼척시의원

선거구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읍면동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20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가” 선거구	31,124	6,225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312	16	312	8,391	1,679
				하장면	247			1,232	247
				미로면	312			1,725	345
				신기면	126			626	126
				성내동	312			6,654	1,331
				교 동	312			12,496	2,500
“나” 선거구	22,963	4,593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원덕읍	230	12	230	3,012	623
				근덕면	230			4,732	947
				노곡면	139			692	139
				가곡면	128			636	128
				남양동	230			6,510	1,302
				정라동	230			7,381	1,476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 1/3 이상(2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 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3. 2023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② 청구 연서대상 서명인수
54,936	1,099

- 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② **청구 연서대상 서명인수**
-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4. 2023년도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② 청구 연서명인수
54,936	1,099

- 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② **청구 연서대상 서명인수**
-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